

※ 우선선정 기준에 관계없이 **최우선선정**

① '22년도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대상 기업, ②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, ③ 조선업종(226**)

선 정 항 목	항목별 가중치	비고
■ 공통적용 항목	최대 70점	
①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- 근로자수 4인 미만 10점, 4~6인 미만 5점, 5~9명 3점	최대 10점	'23.3월 공식통계 상시 근로자수 기준
② 폭염재난 예방설비 최초 보조지원 사업장	10점	
③ 폭염재난 취약 사업장* * 건설업종[90515], 농업[800**], 어업[700**], 택배·운수업 [운수부대서비스업(50005), 항만내의육상하역업(50008), 육상 화물취급업(50010), 각종운수부대사업(50011), 화물운수업·택 배업·퀵서비스업(50105~50111)],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(90102)	10점	산업재해보상보험 상 업종
④ “고열” 유해인자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사업장	10점	'22년 작업환경측정 결과
⑤ 폭염 예방설비 외 사고사망 예방설비 추가 신청사업장 - 화재·폭발 예방설비(고정 설치품에 한함) 20점 - 이외 추가 사고사망 예방설비(품목코드)별 5점	최대 30점	폭염예방설비와 동시 고위험개선 신청품목에 한함 [첨부2]
■ 자율활동 우수항목	최대 30점	
⑥ KOSHA-MS 인증 사업장	15점	인정 유효기간 내 보조금신청 시 점수 부여
⑦ 위험성평가 참여 사업장 - 인정 10점, '22년 컨설팅 실시사업장(인정사업장 제외) 5점	10점	인정 유효기간 내 보조금신청 시 점수 부여
⑧ 대·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지원 업체 - '22년 공생협력 참여 협력업체 포함	5점	
계	100점	

※ 개별선정 점수가 동일할 경우 항목별 순번(②→③→④→⑤→⑥→⑦)의 고득점 사업장 순으로 우선선정

※ 공생협력 프로그램은 사업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⑧대·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지원 업체로 수정